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정재동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청년 창업 지원(안 제5조)
-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(안 제9조)
- 창업지원센터 입주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및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년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
-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혁신주체인 청년을 위한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창업 관련 지원은 창업률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한 바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